



제 417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국립해양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〉

■ 송재봉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0782호

2024. 8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최선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	2

I. 제안경위

2024년 6월 21일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

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.

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「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, 제22조 및 제26조).

Ⅲ. 검토의견

1.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① 현재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법의 해양과학관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(안 제명, 제1조, 제2조, 제22조, 제26조), ②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준비, 물품의 무상양도 및 직원임용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부칙 제2조, 제3조, 제7조 등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	<u>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국립해양과학관</u> 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·전시·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,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국립해양과학관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법인격) <u>국립해양과학관</u> (이하	제2조(<u>국립해양과학관 등의 법인격</u>)

현행	개정안
“해양과학관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 <신설> 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<u>국립해양과학관</u>이 아닌 자는 <u>국립해양과학관</u>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제26조(과태료)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<u>국립해양과학관</u>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(생략)	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. 1. <u>국립해양과학관</u> 2. <u>국립미래해양과학관</u>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은 법인으로 한다. 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----- ----- <u>해양과학관</u>이 ----- --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-----. 제26조(과태료) ① ----- -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(1)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근거 마련

- ☐ 해양수산부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 외에 현재 충북 청주시에 내륙지역 국민도 가까이에서 해양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에 있음.

[표]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사업개요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
건립위치	청주시 청원구 정상동(청주 밀레니엄타운 내)
사업주체	해양수산부
사업기간	2020~2025 ('25년 하반기 개관 예정)
규모	건축연면적 14,980m ²
주요구성	전시시설, 교육시설, 관람객 편의시설, 수장시설 등
추진배경	· 연안지역에 비해 해양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내륙지역 국민도 가까이에서 해양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관 건립 추진 · 해양과학문화 인프라의 내륙권 설치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내륙지역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통한 해양과학 발전 기반 조성
총사업비	95,800(국비 88,300, 지방비 7,500)
건립일정	·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('19.12) ·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설계용역('20.7~'21.12) ·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전시기획 및 전시물 제작·설치('21.4~'25.4) ·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공사 착공('22.10) ·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준공 및 법인 출범('25.4) · 국립미래해양과학관 개관('25.下 예정)

□ 개정안은 '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명을 「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고, 국가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- 설립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고, 이 법에 따라 사업(제5조), 임원(제6조)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.
-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기존 울진군에 설립되어 있는 국립해양과학관과는 각각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인력·예산이 운영될 예정임.¹⁾
- 참고로,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별 조직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.

[표] 부처별 조직운영체계 현황

구분	문체부	과기부	환경부
대표기관 소속기관 운영	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(13개, 중앙박물관 소속)	국립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	국립생물자원관 -
개별법인 운영	-	대구·광주·부산 과학관	낙동강·호남권 생물자원관

1)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체계대로 특정 과학관에 대표기능을 부여하지 않고, 정부(해양수산부)가 기관 간 연계·조정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.

(2)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

- 또한, 개정안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준비, 물품의 무상양도, 직원임용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두고 있음.

법률 본칙의 내용이 시행되기 전 시행일에 앞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해양수산부가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준비 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을 국립미래해양과학관에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,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직원으로 임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함.

- 다만, 시행일의 경우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, 특정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건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한편, 안 부칙 제7조제1항의 “국립미래해양박물관”은 “국립미래해양과학관”의 오키인 것으로 보이는데 “국립미래해양과학관”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 부칙

구분	내용
부칙 제1조 (시행일)	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제2조 (설립준비)	제2조(설립준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③ 설립 당시의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(連名) 으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 ⑥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.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부칙 제3조 (물품의 무상양도)	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(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(제16조제1항에 다른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부칙 제7조 (직원임용의 특례)	제7조(직원임용의 특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미래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「국가공무원법」상의 정년에 따른다. 다만,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이 「국가공무원법」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.

문 의 처
02)6788-5418